

서류		발급 기준	세부 사항
필수 사항	신분증 / 인감도장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2020.12.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※ 재외동포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• 용도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, (본인 발급용, 대리인 발급용 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불가
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	•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(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)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직계 존속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	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
추가 사항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복무 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(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)
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 "전체포함" 발급
	전세 피해자 확인 서류	본인 또는 세대원	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(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)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받기 위한 경우
	기존주택 처분조건 서약서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(별지 제6호서식) ※ 기존주택에 비치 ※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(특별공급 중 출산 특례에 해당하는 자)
	단신부임	본인	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: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: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받은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
		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 30세 미만인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,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/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*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	직계 비속	•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※ 기록 대조일: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	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
대리인	위임장	본인	• 접수 장소 비치(신청자 인감도장 날인)
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• 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(본인 발급용, 대리인 발급용 불가)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 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	대리인 인장	대리인	• 서명 가능